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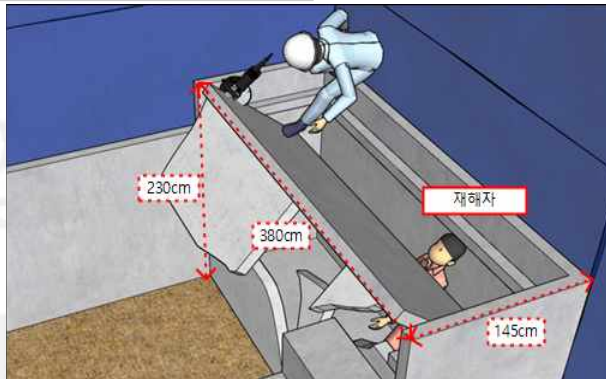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2021.11.03.(수) 14:25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, 콘크리트 단층 창고의 지붕 슬래브를 잘라내던 중, 지붕 슬래브가 무너져 창고 내부에 있던 재해자가 벽과 떨어진 슬래브 사이에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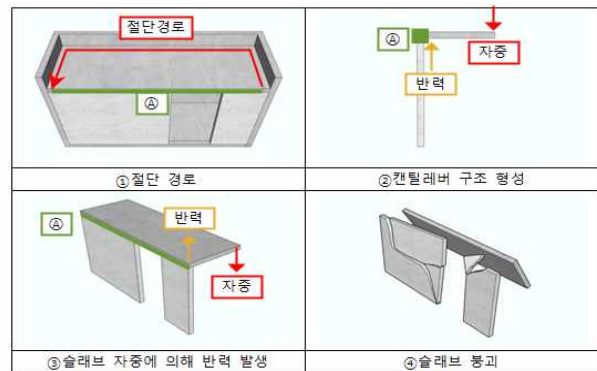
【 유사 재해사례 】

- ◆ 2021.8.29.(일) 14:44분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소재 대학교 의료원 엘리베이터 철골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 1층 피트 내부에 설치된 슬래브 해체작업 중,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지하2층 피트 바닥으로 떨어져(H=6.3m) 사망
- ◆ 2021.04.30.(금) 15:27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현장에서 상부 건축물 해체 후 생성된 폐기물이 쌓여있던 지상 3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며, 지상 3층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

재해상황도



< 사고 상황도 >



<붕괴 과정 추정>

재발방지대책

○ 출입의 금지

-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.

○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·실행

-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작업에 앞서 콘크리트의 형상, 중량 등을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.

- 가.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
- 나. 가설설비·방호설비·환기설비 및 살수·방화설비 등의 방법
- 다. 사업장 내 연락방법
- 라. 해체물의 처분계획
- 마. 해체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의 작업계획서
- 바.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
- 사. 그 밖에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